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윤창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151호)

2022.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목 차

I . 윤창현의원 대표발의(2113151)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총괄검토	4
나. 주요조문별 검토	9
1) 법률의 제명	9
2) 정의(안 제2조)	1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12
4) 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8조)	13
5)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안 제9조)	15
6) 보고 등(안 제16조)	16
7) 조사관 등(안 제17조)	17
8) 직원의 신분보장(안 제18조)	18
9) 자문기구의 설치 등(안 제19조)	19
10) 조사의 방법(안 제22조)	20
11)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안 제27조)	24

12) 추징(안 제29조)	25
13) 해외 부정재산의 환수 등(안 제32조)	26
14)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4조)	27
15)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안 제38조)	28
16)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3조)	30

I. 윤창현의원 대표발의(2113151)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창현의원 등 103인

나. 발 의 일 : 2021. 11. 5.

다. 회 부 일 : 2021. 11. 15.

2. 제안이유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로 불거지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이 구속되었고, 동시에 민간사업자(화천대유) 실소유주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이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지며 지방행정 농단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을, 투자자(천화동인1호~7호)는 3억을 투자하고 3,463억원 등의 부정한 배당 이익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부정이익이 발생할 예정에 있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여기에 더해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민간사업자, 투자자가 사전에 불법과 부정을 도모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동체가 되어 지방행정을 농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아울러 성남시 위례신도시개발사업, 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재명 성남

시장 재직기간 중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행정농단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부정재산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자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조사 및 환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음(안 제8조).

사.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지방행정농단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함(안 제21조제1항).

차.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불법·부정재산은 그 취득·증여·상속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환수(還收)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함(안 제28조).

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징을 심의·의결한 부정재산에 대한 재산보존의 공조 및 부정재산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0조).

파. 지방행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 34조).

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 등을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41조 및 제42조).

4. 검토의견

가. 총괄검토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법률로서 주요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가 부정재산을 조사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며, 그 결정에 따라 환수 및 추징을 하고 환수금 및 추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총 6개의 장(章)과 43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서 담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정재산의 조사 및 귀속 절차 등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조문 체계 】

장(章)		조(條)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조 ~ 제20조	위원회의 설치·업무·구성·회의 등, 사무처의 설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3장	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제21조 ~ 제27조	조사의 개시·방법, 동행명령,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
제4장	부정재산의 환수 및 추징	제28조 ~ 제34조	부정재산의 환수·추징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제5장	보칙	제35조 ~ 제39조	비밀준수의무,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6장	벌칙	제40조 ~ 제43조	벌칙, 과태료, 포상금 지급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정안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 권한 행사로부터 발생한 부정재산을 환수·추징함으로써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2조

는 부정채산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환수하는 내용임.

헌법 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은 위헌이라는 입장임.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가 가능하다고 판시¹⁾하고 있는데, ①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거나,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거나, ④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따라서 제정안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의 중대성과 사적 이익 침해의 정도, 기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

1)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7. 10. 26. 2015헌바239 등,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회 등을 고려하여 소급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둘째, 환수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수제도는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이전한다는 점에서 형사적인 몰수와 유사하나 공소제기와 무관하게 환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위원회의 행정처분에 기초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제정안의 환수절차를 살펴보면 부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부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정보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의 개시가 가능하고, 위원회의 실지 조사나 진술청취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지는 등 형사절차에 비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반면, 형사절차에 비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과 유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형사절차에 의한 몰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행정농단은 형사절차에 의한 몰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제정안은 소송이 계속 중인 재산에

관하여 조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형사몰수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의 성격과 진상조사 및 환수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제명에 따르면 진상조사 및 환수의 대상은 “성남시”의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이므로 개별사건법률인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부정채산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도 제명과 동일한 취지로 보임.

반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진상조사 및 환수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행정농단”은 성남시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

이처럼 제명과 “부정재산”의 개념에 따르면 특정지역이 진상조사 및 환수의 대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목적 조항과 “지방행정농단”의 정의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부당행위가 진상조사 및 환수의 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정안의 취지가 불법·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의 환수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에 있다면 그 대상을 특정 지역 및 기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역이나 동일지역 다른 기간의 불법·부정행위와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하에서는 개별 조항 중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주요조문별 검토

1) 법률의 제명

제정안의 제명은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상조사 및 환수의 대상을 특정 지역, 특정 기간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제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의 개념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진상조사 및

환수의 대상도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특정 개발사업 유형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제명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제명에서는 “부정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의규정을 포함한 제정안 전반에서는 “부정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명의 “부정이익”을 “부정재산”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농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형성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방행정농단자”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물질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공모 또는 방조한 자를 말한다. 3. “부정재산”이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자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행정농단, 지방행정농단자, 부정재산 등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개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지방행정농단이라는 불법행위의 개념을 우선 정의하고, 이를 통해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공모 또는 방조한 자를 지방행정농단자로 규정하며,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자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부정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제1호는 “지방행정농단”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형성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이 행정권한을 이용하여 불법·부정하게 축적한 재산도 진상조사 및 환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공공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부당”은 행정처분이 법규의 위반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부당한 행정행위까지 환수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비추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 제2조제2호는 “지방행정농단자”를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물질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공모 또는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상조사 및 환수의 대상은 물질적 이득이고, 지방행정농단이

라는 불법행위 또한 물질적 이득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사회적 이득을 얻은 자를 지방행정농단자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 제2조제3호는 부정재산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자가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유래한 재산”이라는 용어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²⁾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부정재산에 대한 환수 및 추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안 제3조는 이 법은 부정재산에 대한 환수 및 추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동 법률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축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부정재산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³⁾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4) 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안 제8조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되, 이 기한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형법」 제48조 등 형사절차에 의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몰수와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수는 다른 절차이고, 추징은 몰수를 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인데 다른 법률에 따라 몰수가 진행될 때에는 제정안이 우선 적용되지 않다가 몰수가 어려워 추징을 할 때에만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임.

안 제8조제1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성을 마친 날의 의미가 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위원회 업무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둔 사무처 구성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므로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⁴⁾.

안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무기한 활동이 가능한데, 이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제1항의 취지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행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기간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이와 유사한 사례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성을 마친 날을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일, 비상임위원 임명장 수여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일, 사무처 구성이 완료된 일로 보는 의견이 각각 대립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기간 기산점을 구체화하거나 활동기간 종료일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5)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안 제9조는 위원이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위원의 신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서 면직할 필요가 있는지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⁶⁾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6)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보고 등(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보고 등)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16조는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위원회 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7)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8조에서는 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6조에 보고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조사관 등(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조사관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의 채용과 임무 등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7조는 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사관의 채용과 임무 등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관을 두려는 취지로 보이나, 조사관이 직원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안 제35조(비밀준수의무), 안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 등 직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항들이 조사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관을 직원으로 채용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조사관의 임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조사관을 별도로 채용하는 취지를 달성하고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관의 임무와 권한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직원의 신분보장(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⁸⁾

안 제18조는 위원회 직원이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8)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중략)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고,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안 제18조제2항은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이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9조는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9) 자문기구의 설치 등(안 제19조)

제 정 안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9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등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두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0조에서는 “자문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안 제35조 및 제36조는 “자문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역사연구가”와 “사회 및 종교지도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부정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위원회 업무 성격에 비추어 자문위원 자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0) 조사의 방법(안 제22조)

제 정 안
제22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정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부정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

제 정 안

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방행정농단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정재산 등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2조는 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감정의 의뢰,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지정된 감정인의 허위 감정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2조제4항은 위원 또는 직원이 부정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실지조사에서 진술을 청취할 때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00조⁹⁾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진술조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같은 조에는 제2항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22조제3항은 위원회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방행정 농단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정재산 등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¹⁰⁾의 입법례에 따라 누구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

9)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사의 방법)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⑦ (생략)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 장소에 임의로 출석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⑥ (생략)

정하는 한편 진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22조제5항은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후단 규정에 따르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기만 하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실지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거부 사유를 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¹¹⁾은 실지조사 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요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1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사의 방법) ①~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11)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안 제27조)

제 정 안
제27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안 제27조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이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7조제1항은 특정한 업무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될 때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는 행정기관 간 협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협조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기관 간 협조의 일반적인 근거규정은 「행정절차법」 제7조¹²⁾에 마련되어 있음.

안 제27조제2항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의 대

12)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상 및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어느 범위까지 위임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위임의 대상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2) 추징(안 제29조)

제 정 안
제29조(추징) ① 부정재산을 환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지방행정농단자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환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행정농단자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안 제29조는 부정재산을 환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환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은 부정재산 추징의 대상을 “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 및 환수 절차는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범인”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지방행정농단자”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해외 부정재산의 환수 등(안 제32조)

제 정 안
제32조(해외 부정재산의 환수 등) ① 외국으로부터 부정재산 등의 환수는 외교부 장관이 행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환수받은 부정재산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안 제32조는 외국으로부터 부정재산 등의 환수는 외교부 장관이 행하고, 외교부 장관은 환수받은 부정재산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해외 부정재산의 환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례¹³⁾를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34조에서는 환수금

1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① 법무부 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집행재산등의 환수(還收)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의 환수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요청서를 외교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①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 장관이 행한다.

② 외교부 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① 법무부 장관은 송부받은 집행재산등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이를 환가(換價)하거나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의 가액이 현저하게 낮거나 집행재산등의 매각에 있어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없을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집행재산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집행재산등의 매각을 공조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매각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및 추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환수한 부정채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기 보다는 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4)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4조)

제 정 안
제34조(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① 지방행정농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추징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2. 이 법에 따른 환수·추징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경비

안 제34조는 지방행정농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추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조는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

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동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1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5)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안 제38조)

제 정 안
제38조(조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외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행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지방행정농단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지방행정농단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4. 지방행정농단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지방행정농단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정 안

-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안 제38조는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시정조치 등 권고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매년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는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하거나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위원회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시정조치 및 징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실

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회는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본회의 활동을 통해 권고내용의 이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로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개선이나 징계 등 환류조치를 취하는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6)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3조)

제 정 안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안 부칙 제3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위원회 위원이 구성된 이후에도 활동이 바로 시작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가능한 길게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보이나, 안 제6조제5항은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 제1항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안 부칙 제3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74